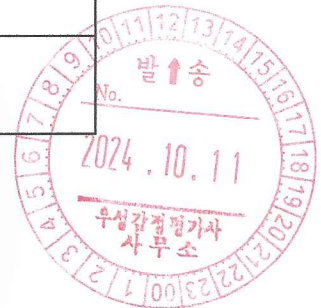


감정평가서

건명	손호중 소유물건(2024타경4149)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주정렬
감정서번호	WS240930-01



우성감정평가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3, 907호(연산동, 부산은행 연산동금융센터)
TEL. 051-851-5557 FAX. 051-851-5547



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88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211동 902호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문양환

문양환



감정평가액	오억팔천구백만원정 (₩589,000,000.-)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주정렬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7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손효종 (2024타경4149)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10.04	2024.10.04	2024.10.11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세대 이	구분건물	1세대 하 여	- 백	589,000,000
	합계					₩589,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88	공동주택 (아파트)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위 철골경사지붕 22층	지1	82.320			
	코오롱하늘채 2차아파트 제211동				1층~3층	각 899.206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4층~19층	각 889.966			
	화명신도시로 100				20층~22층	각 737.067			
동소	2288	대	(내)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제9층 제902호	118.984	118.984	589,000,000	비준가액 집합건축물 대장상 공용면적포함 : 152.737㎡ (주차장면적 : 19.315㎡ 제외)	
			1 소유권대지권	55.303 57,507.7×---- 57,507.7		55.303			
합 계								₩589,000,0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소재 '부산도시철도 2호선 화명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제211동 제902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임의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의 개요

기호(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88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제211동 제9층 제902호
(전용면적 : 118.984㎡, 사용승인일 : 2002.12.06)

3. 감정평가의 근거

본건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실무기준"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칙, 기준과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에 따라 평가하였음.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 1)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함.
- 2)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①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조건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실시기간

- (1)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②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10월 04일**로 하였음.
- (2) 본건은 대상물건 소재지에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 실시일은 2024년 10월 04일임.

6. 감정평가방법

(1) 감정평가의 방법에 대한 검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이 요구되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 1)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며,
- 2) "공시지가기준법"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며,
- 3)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며,
- 4)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위치, 주위환경, 교통사정 등 입지조건,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층별·위치별·향별 효용도 등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과 인근 동류형 및 유사물건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②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주된 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결정하되, 인근 동류형 및 유사물건의 가격수준, 평가전례, 거래사례 등 참고가격 자료를 통하여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7. 그 밖의 사항

- 1)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를 기준하여 분양 및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법원의 요청에 의거 대상물건의 평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감정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2) 본건은 실지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관련 공부 및 외부관찰에 의하여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본건 내부의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이 요망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본건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

2. 대상물건의 개요

가. 대상 물건의 기본적 사항

물건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88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00						
건물명·동·호수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제211동 제9층 제902호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위 철골경사지붕 22층 공동주택(아파트)			건물의 사용승인일		2002.12.06	
구 분		대지권 (㎡)	전유면적 (㎡)	공용면적 (㎡) (주차장면적: 19.315㎡ 제외)	공부면적 (전유 +공용) (㎡)	용 도		
기호	동·층·호수					공부	현황	
1	제211동 제9층 제902호	55.303	118.984	33.753	152.737	아파트	아파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인근 거래사례와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화명동 2288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단가: 원/m², 거래금액: 원)

기호	동·호수	전유면적 (m ²)	거래금액	전유면적당 단가	거래시점	비고
ㄱ	208동 1603호	118.984	600,000,000	5,042,694	2024.09.03	감정평가 정보체계
ㄴ 선정	211동 1003호	118.984	590,000,000	4,958,649	2024.07.22	감정평가 정보체계
ㄷ	211동 1401호	118.984	608,000,000	5,109,930	2023.10.26	감정평가 정보체계

2) 거래사례의 선정

본건 구분건물의 평가에 적용할 거래사례는 평가대상 구분건물과 제반 가치 형성요인이 유사한 거래사례인 기호<ㄴ>을 선정하였음.

4. 사정보정

- 1)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 2) 상기 선정된 거래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내의 유사물건과 부합하고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볼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음.(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시점수정

- 1) 시점수정이란 감정평가액 산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준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함.
- 2) 본건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아파트 월간 매매가능지수'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함.
- 3) 시점수정치의 산정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부산광역시 북구

거래시점 : 2024.07.22, 2024년06월 지수를 적용함

기준시점 : 2024.10.04, 2024년09월 지수를 적용하여야하나 발표이전

이므로 2024년08월 지수를 적용함

2024.07.22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06월) : 92.6

2024.10.04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08월) : 92.4

시점수정치 : $92.4/92.6 \approx 0.99784$

시점수정치	0.99784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가치형성요인 비교

구분	조건	항목	격차율	비고
외부요인	가로조건	가로의 폭 및 구조 등의 상태 등	1.00	본건과 사례는 같은 아파트인바 대등함.
	접근조건	도심과의 거리, 교통시설의 상태, 상가의 배치상태 등		
		공공 및 편익시설의 배치상태		
	환경조건	기상조건, 자연환경, 사회환경, 획지의 상태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의 상태, 재해 및 공해발생의 위험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등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등			
건물요인	시공상태	전체 건물의 기초, 벽체의 방습, 방음, 단열 및 안정성 등	1.00	본건과 사례는 같은 아파트인바 대등함.
	설계, 설비 구조	설계에 따른 구조상의 양부와 설비의 유무, 종류, 수준 등		
	노후도	준공시점, 입주시점 등 실제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		
	공용시설	주차시설규모, 집회실, 현관시설, 놀이시설, 노인정 등		
	규모 및 구성비	건물의 층수, 총세대수, 각 평형별 구성비 등		
	건물용도	건물이 주상복합용인가 주거단일 용도인가와 현재 이용상태 등		
	관리체계	관리체계 및 관리현황 유지 보수 체계 등		
개별적 요인	평형별효용	사회적 인식 및 소유자의 선호도, 환가성, 동류집단의식 등	1.00	본건은 9층, 사례는 10층으로 층별효용에서 대등함.
	층별, 위치별, 향별 효용	일조, 채광의 정도, 조망, 압박감, 소음의 영향, 승강기 및 계단을 이용한 접근성, 난방 및 단열, 프라이버시 및 외부인 침입가능성, 혐오시설에서의 거리, 재해시 안전성 등		
	전용율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에 대한 전유면적의 비율		
	부지에 대한 지분면적	대지권의 종류 및 크기		
	관리상태	배관, 내부마감재 수선유지상태 등		
기타요인	기타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1.00	대등함.
누계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상기 제요인을 참작하여 아래 산식에 의하여 시산가액을 산정함.

기호	거래사례 가격(원)	사정 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	전유면적비교 (m ²)	시산가액 (원)
1	590,000,000	1.000	0.99784	1.000	118.984/118.984	589,000,000

※ 본건 시산가액은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십만원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8. 참고 : 그 밖의 사항

1) 인근 유사 구분건물의 가격수준

(단가: 원/m²)

이용상황	가격수준 (전유면적당 단가)	비 고
아파트	4,800,000 ~ 5,500,000 정도내외 호가 (층별.향별에 따라)	주변 탐문 등
가격수준에 관한 의견	인근 동류형 및 유사물건의 경우 위치 등 입지조건,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층별, 위치별, 향별 효용도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인근의 감정평가전례

화명동 2288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단가: 원/m², 감정평가액: 원)

기호	소재지	전유면적 (m ²)	감정평가액 (원)	전유 면적당 단가(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a	210동 1304호	118.984	627,000,000	5,269,616	2024.02.01	조세
b	201동 2206호	84.935	488,000,000	5,745,570	2023.11.08	법원경매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및 감정평가액

1.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상기 참고가격 자료(인근 동류형 및 유사물건의 가격수준, 평가전례, 거래사례 등) 및 인근지역 부동산 경기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볼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적정시되며, 또한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

기호	소재지	전유면적 (㎡)	감정평가액 (원)	단가(원/㎡)
1	화명동 2288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제211동 제9층 제902호	118.984	589,000,000	4,950,245

단가(원/㎡) ≙ 감정평가액(원)/전유면적(㎡)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소재 부산도시철도 2호선 '화명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 2호선 화명역이 소재하는 바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위철골경사지붕 22층 건내 9층 902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이중창구조,
내부 및 내부마감재 등은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조사하지 못하였음.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가로망이 확보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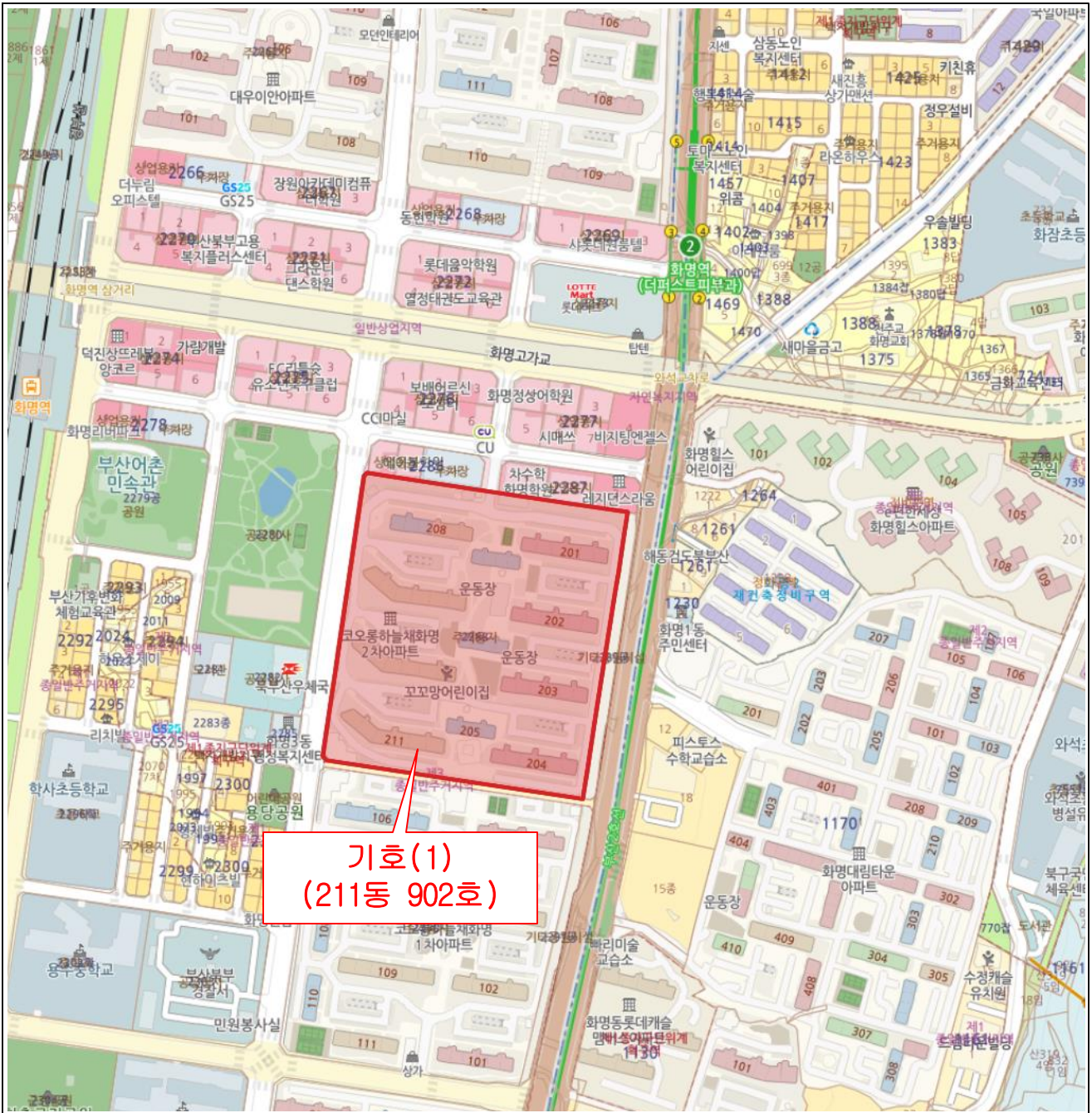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없음.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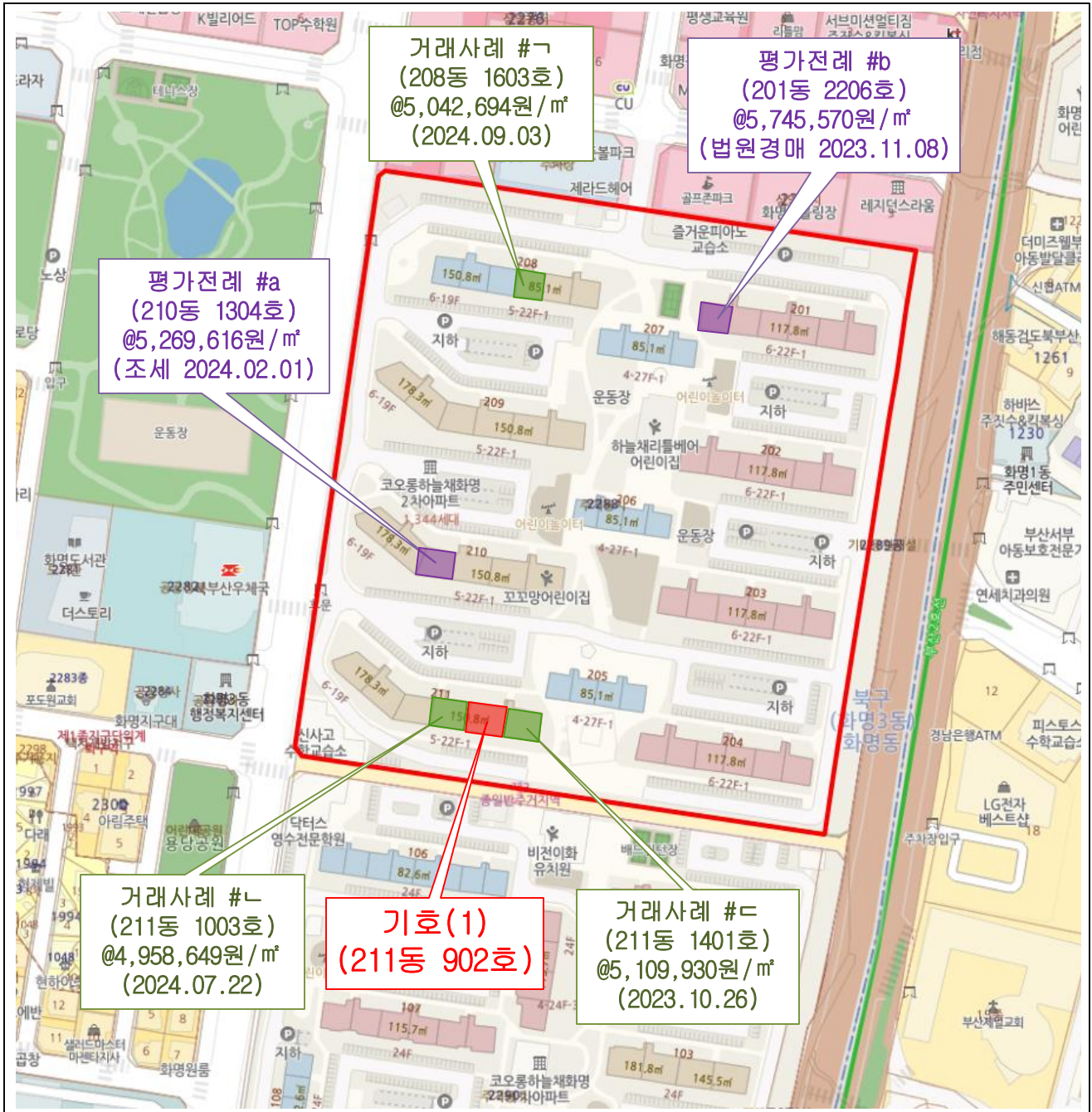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88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211동 9층 902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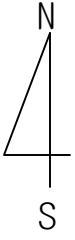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88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211동 9층 902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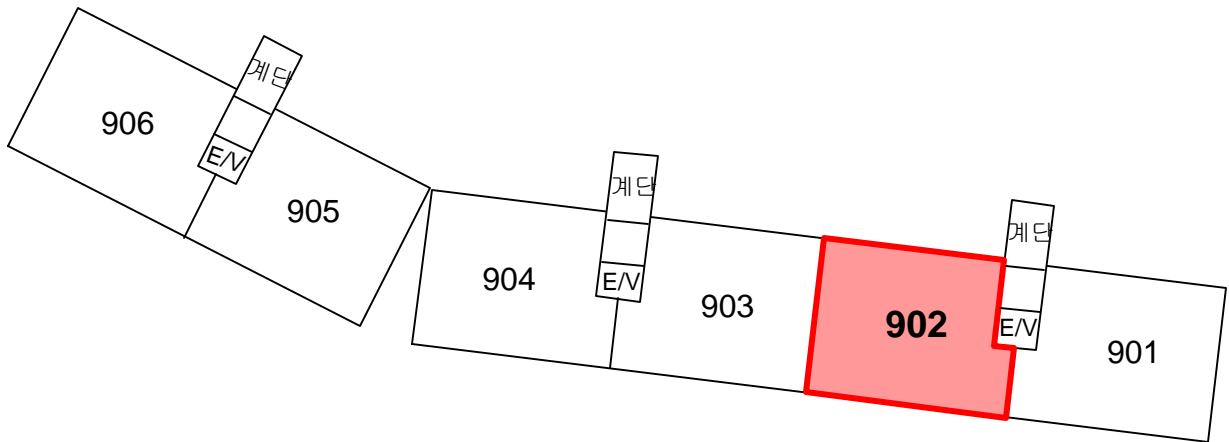


건물개황도



None Scale

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제211동 제9층 호별배치도





(1)

2

211 902



(1) 211 1, 2



(1) 211 902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20-10
삼환아파트
207동 2205호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문양환

문양환 

감정평가액	이억일백만원정 (₩201,000,000.-)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주정렬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7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손호중 (2024타경4149)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10.04	2024.10.04	2024.10.11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세대 이	구분건물	1세대 하 여	- 백	201,000,000
	합 계					₩201,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20-10	공동주택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5층				
	삼환아파트 제207동			1층	606.84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429번길 20			2층~25층	각 598.20			
	동소	120-10		지하	518.40			
			대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22층 제2205호	59.76	59.76	201,000,000	비준가액 집합건축물 대장상 공용면적포함 :80.883㎡ (주차장면적 :9.125㎡ 제외)
			1 소유권대지권	23,215 61,283 × ---- 61,607,000	23.0929			
합 계							₩201,000,0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소재 '부산도시철도 1호선 낮개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삼환아파트 제207동 제2205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임의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의 개요

기호(2)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20-10 삼환아파트 제207동 제22층 제2205호
(전용면적 : 59.76㎡ 사용승인일 : 1996.09.13)

3. 감정평가의 근거

본건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실무기준"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칙, 기준과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에 따라 평가하였음.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 1)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함.
- 2)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①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조건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실시기간

- (1)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②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10월 04일**로 하였음.
- (2) 본건은 대상물건 소재지에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 실시일은 2024년 10월 04일임.

6. 감정평가방법

(1) 감정평가의 방법에 대한 검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이 요구되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 1)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며,
- 2) "공시지가기준법"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며,
- 3)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며,
- 4)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위치, 주위환경, 교통사정 등 입지조건,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층별·위치별·향별 효용도 등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과 인근 동류형 및 유사물건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②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주된 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결정하되, 인근 동류형 및 유사물건의 가격수준, 평가전례, 거래사례 등 참고가격 자료를 통하여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7. 그 밖의 사항

- 1)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를 기준하여 분양 및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법원의 요청에 의거 대상물건의 평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감정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2) 본건은 실지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관련 공부 및 외부관찰에 의하여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본건 내부의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요망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본건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

2. 대상물건의 개요

가. 대상 물건의 기본적 사항

물건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20-10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429번길 20					
건물명·동·호수		삼환아파트 제207동 제22층 제2205호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5층 공동주택(아파트)			건물의 사용승인일		1996.09.13
구 분		대지권 (㎡)	전유면적 (㎡)	공용면적 (㎡) (주차장면적: 9.125㎡ 제외)	공부면적 (전유 +공용) (㎡)	용 도	
기호	동·층·호수					공부	현황
2	제207동 제22층 제2205호	23.0929	59.76	21.123	80.883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인근 거래사례와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다대동 120-10 삼환아파트

(단가: 원/m², 거래금액: 원)

기호	동·호수	전유면적 (m ²)	거래금액	전유면적당 단가	거래시점	비고
ㄱ'	207동 902호	59.76	175,500,000	2,936,746	2024.04.06	감정평가 정보체계
ㄴ'	207동 1207호	59.76	178,000,000	2,978,580	2024.04.02	감정평가 정보체계
ㄷ' 선정	207동 2003호	59.76	203,000,000	3,396,921	2024.02.24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 거래사례의 선정

본건 구분건물의 평가에 적용할 거래사례는 평가대상 구분건물과 제반 가치 형성요인이 유사한 거래사례인 기호<ㄷ'>을 선정하였음.

4. 사정보정

- 1)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 2) 상기 선정된 거래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내의 유사물건과 부합하고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볼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시점수정

- 1) 시점수정이란 감정평가액 산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준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함.
- 2) 본건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아파트 월간 매매가능지수'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함.
- 3) 시점수정치의 산정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거래시점 : 2024.02.24, 2024년01월 지수를 적용함

기준시점 : 2024.10.04, 2024년09월 지수를 적용하여야하나 발표이전

이므로 2024년08월 지수를 적용함

2024.02.24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01월) : 96.5

2024.10.04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08월) : 95.4

시점수정치 : $95.4/96.5 \approx 0.98860$

시점수정치	0.9886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가치형성요인 비교

구분	조건	항목	격차율	비고
외부요인	가로조건	가로의 폭 및 구조 등의 상태 등	1.00	본건과 사례는 같은 아파트인바 대등함.
	접근조건	도심과의 거리, 교통시설의 상태, 상가의 배치상태 등		
		공공 및 편익시설의 배치상태		
	환경조건	기상조건, 자연환경, 사회환경, 획지의 상태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의 상태, 재해 및 공해발생의 위험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등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등			
건물요인	시공상태	전체 건물의 기초, 벽체의 방습, 방음, 단열 및 안정성 등	1.00	본건과 사례는 같은 아파트인바 대등함.
	설계, 설비 구조	설계에 따른 구조상의 양부와 설비의 유무, 종류, 수준 등		
	노후도	준공시점, 입주시점 등 실제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		
	공용시설	주차시설규모, 집회실, 현관시설, 놀이시설, 노인정 등		
	규모 및 구성비	건물의 층수, 총세대수, 각 평형별 구성비 등		
	건물용도	건물이 주상복합용인가 주거단일 용도인가와 현재 이용상태 등		
	관리체계	관리체계 및 관리현황 유지 보수 체계 등		
개별적 요인	평형별효용	사회적 인식 및 소유자의 선호도, 환가성, 동류집단의식 등	1.00	본건은 22층. 사례는 20층으로 층별효용에서 대등함.
	층별, 위치별, 향별 효용	일조, 채광의 정도, 조망, 압박감, 소음의 영향, 승강기 및 계단을 이용한 접근성, 난방 및 단열, 프라이버시 및 외부인 침입가능성, 혐오시설에서의 거리, 재해시 안전성 등		
	전용율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에 대한 전유면적의 비율		
	부지에 대한 지분면적	대지권의 종류 및 크기		
	관리상태	배관, 내부마감재 수선유지상태 등		
기타요인	기타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1.00	대등함.
누계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상기 제요인을 참작하여 아래 산식에 의하여 시산가액을 산정함.

기호	거래사례 가격(원)	사정 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	전유면적비교 (m ²)	시산가액 (원)
2	203,000,000	1.000	0.98860	1.000	59.76/59.76	201,000,000

※ 본건 시산가액은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십만원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8. 참고 : 그 밖의 사항

1) 인근 유사 구분건물의 가격수준

(단가: 원/m²)

이용상황	가격수준 (전유면적당 단가)	비 고
아파트	2,800,000 ~ 3,500,000 정도내외 호가 (층별·향별에 따라)	주변 탐문 등
가격수준에 관한 의견	인근 동류형 및 유사물건의 경우 위치 등 입지조건,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층별, 위치별, 향별 효용도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인근의 감정평가전례

다대동 120-10 삼환아파트

(단가: 원/m², 감정평가액: 원)

기호	소재지	전유면적 (m ²)	감정평가액 (원)	전유 면적당 단가(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a'	208동 2006호	59.76	226,000,000	3,781,793	2024.05.09	법원경매
b'	203동 114호	59.76	181,000,000	3,028,781	2023.11.28	법원경매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및 감정평가액

1.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상기 참고가격 자료(인근 동류형 및 유사물건의 가격수준, 평가전례, 거래사례 등) 및 인근지역 부동산 경기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볼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적정시되며, 또한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

기호	소재지	전유면적 (㎡)	감정평가액 (원)	단가(원/㎡)
2	다대동 120-10 삼환아파트 제207동 제22층 제2205호	59.76	201,000,000	3,363,453

단가(원/㎡) ≙ 감정평가액(원)/전유면적(㎡)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소재 부산도시철도 1호선 'нат개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과 도시철도1호선 낮개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5층 아파트 내 22층 2205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알미늄샷시 및 목재이중창호.
내부 및 내부 마감재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조사하지 못하였음.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소화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남하향의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노폭 약 16미터, 남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정도의 아스팔트 및 보도블록포장도로를 통하여 단지 내 도로와 연결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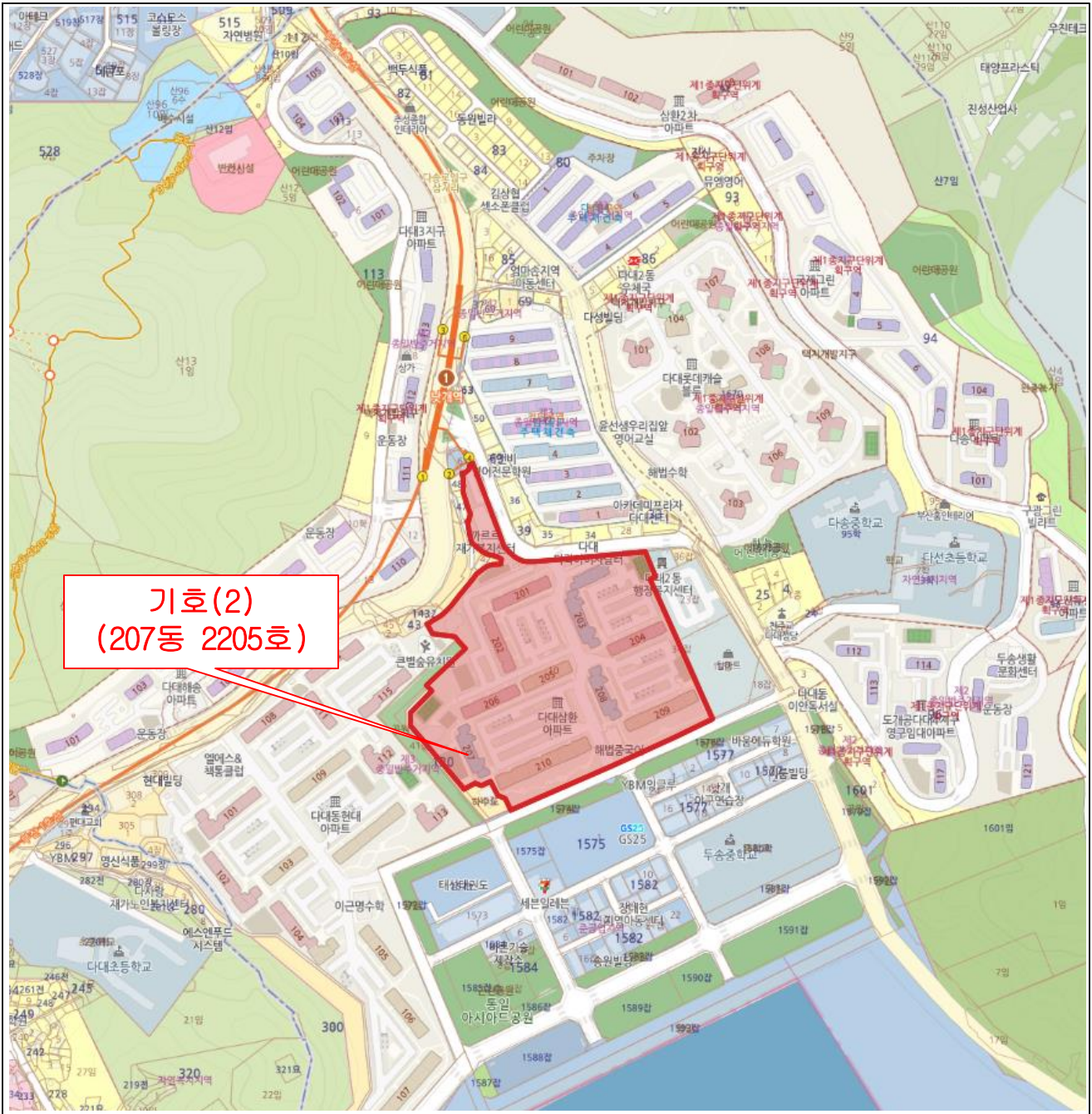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없음.

광역위치도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20-10 삼환아파트 207동 22층 2205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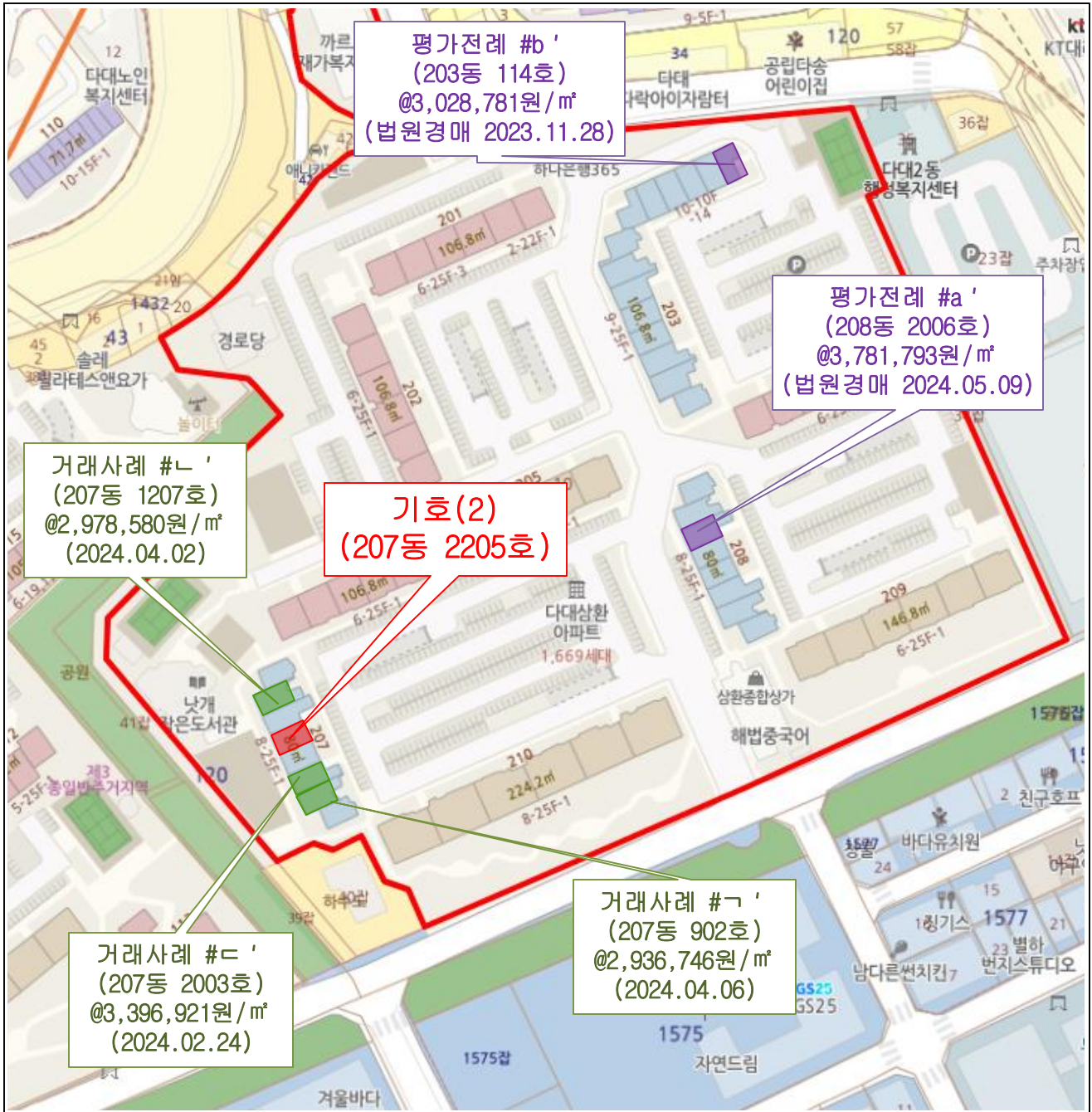


기호(2)
(207동 220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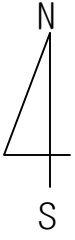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20-10 삼환아파트 207동 22층 2205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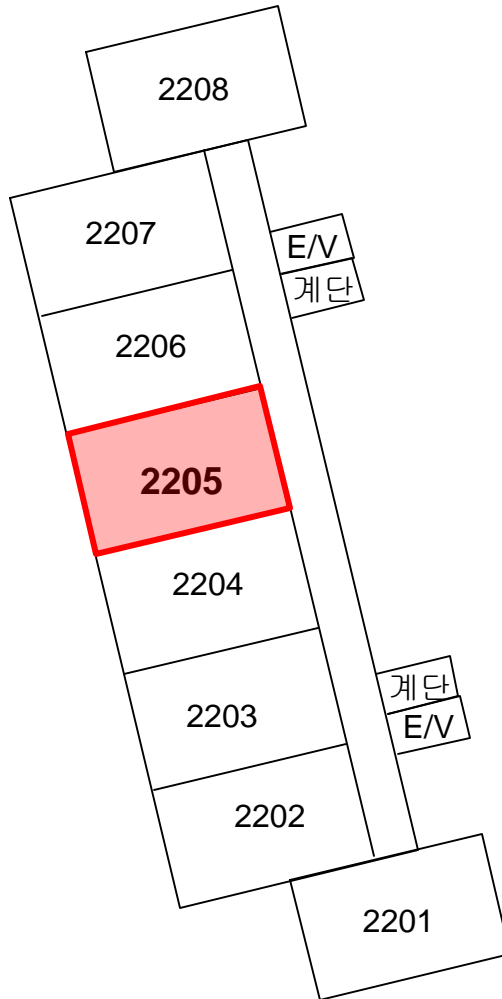


건물 개황도



None Scale

삼환아파트 제207동 제22층 호별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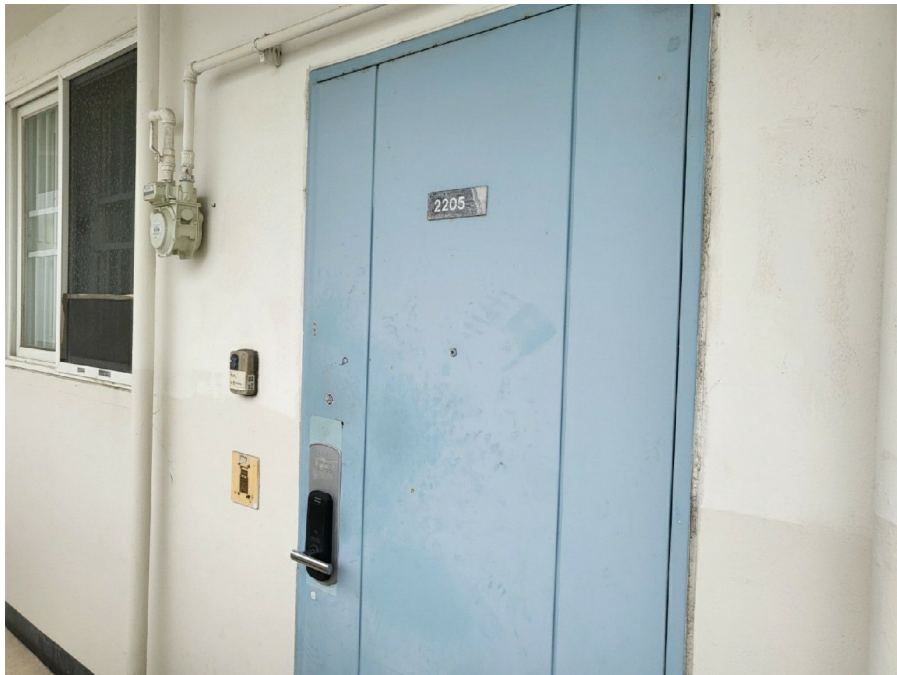


(2)

207 2205



(2) 207 1



(2) 207 2205